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20
----------	-----

2014년 12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년 10월 24일, 오봉수 의원(찬성자 18명)
- 나. 회부일자 : 2014년 11월 5일
- 다. 상정일자 :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 12월 4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오 봉 수 의원)

가. 제안 이유

- 2014.10.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환풍구 덮개 붕괴 참사를 계기로 서울시가 관리하는 서울 광장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신고자가 제출하는 광장사용신고서에 안전관리계획을 포함시킴으로서 관련 행사에 따른 각종 시설물과 행사장 사용자 및 참여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서울광장 사용신고서에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안 별지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한 태 식)

- 본 개정안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서울광장을 사용함에 있어 관련 행사에 따른 각종 시설물과 행사장 사용자 및 참여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안 제5조제1항에 사용신고자가 제출하는 광장사용신고서에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의무화시키고 별지서식에 신고서 제출시 구비서류에도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안 별지 서식).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신고) ① 신고자는 사용 목적과 일시,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 <u>사용예정인원</u>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광장사용신고서를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 또는 사용개시일(이하 "사용일" 이라 한다)의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신고) ① ----- ----- <u>사</u> <u>용예정인원, 안전관리계획</u> 등을 -- ----- ----- ----- ----- ----- -----	

- 현재 집행부는 사용신고시 사용목적과 일시,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 사용예정인원 등을 기재한 조례 별지 서식의 광장사용신고서를 받고 있으며, 구비서류에 행사계획서, 사용위치도, 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자로 하여금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의무화된 규정은 없음.
- 최근 3년간 서울광장을 사용한 행사 수는 409건으로 연중 150건 내외의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판교 테크노벨리 야외 공연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환풍구 덮개 붕괴 참사 등 잇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바,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야외 행사의 경우에도 각종 시설물 및 참여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최근 3년간 서울광장 사용 신고 수리 현황 〉

년 도 별	신 청	수 리			불수리
		소 계	행사실시	행사취소	
계	731	604	409	195	127
2012	296	260	184	76	36
2013	228	189	141	48	39
2014.1~10	207	155	84	71	52

- 다만, 개정안은 별지서식의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요원 배치계획’, ‘응급조치사항’, ‘시민질서유지 사항’, ‘시설물 보호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관리계획관련 내용을 집행부로 하여금 시행규칙 등을 통해 표준화된 안전관리서식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사료됨.

※ 안 별지서식 구비서류

- | | |
|--------|--|
| ☞ 구비서류 |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
4. 안전관리계획서(시설물 설치 및 이용, 광장사용자, 기타 행사참여자 등 대상) |
|--------|--|

- 본 개정을 통하여 향후 행사 규모·특성·진행방식 등을 고려하여 행사별 자체 특성에 맞게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용 신고자가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에는 비상시 취해야 할 조치 등이 포함된 표준서식(신고·안내·대피유도·응급의료·차량 및 관람객 통제 등 상황별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안 등 서울광장 사용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집행부의 적극적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집행부는 조례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서울광장 사용 안전대책 추진계획」을 마련(2014. 11. 26)하고 시행할 예정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용예정인원 등을”을 “사용예정인원, 안전관리계획 등을”로 한다.

별지 서식의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중 구비서류 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안전관리계획서(시설물 설치 및 이용, 광장사용자, 기타 행사 참여자 등 대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p> <p>제5조(사용신고) ① 신고자는 사용목적 과 일시,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 <u>사용 예정인원</u>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광 장사용신고서를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 는 날 또는 사용개시일(이하 "사용일" 이라 한다)의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p> <p>제5조(사용신고) ① ----- ----- <u>사용</u> <u>예정인원, 안전관리계획</u> 등을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